



### 소비자 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 **최소한의 정보 처리 및 동의거부에 관한 안내** - 정보동의서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용 및 제공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아래 동의사항을 읽고 동의하는 경우 각 동의함에 체크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피보험자란 또는 수익자란 한 쪽에만 동의여부를 체크하시더라도, 양쪽 모두 체크하신것으로 적용됩니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 (보험사기 조사 포함)
- 보험모집질서 유지, 공공기관 정책자료로 제공
-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보험금 청구서상 개인(신용)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적 등)
-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피보험자

동의함

보험수익자

동의함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사로부터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포함),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 · 개인(신용)정보 조회 목적

- 보험금 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 (보험사기 조사 포함)

#### · 조회동의 유효 기간

-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여부

피보험자

동의함

보험수익자

동의함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당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보험사고 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 의사, 변호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우편물 운영업체, 리서치 업체, 전산개발·운영업체, 위탁 콜센터 등
- 그외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푸르덴셜생명 라이프플래너®, SM, AM, 보험대리점 등)
- Wish Plus 특약 가입시 계약자가 지정한 기부단체 및 푸르덴셜 사회공헌재단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재보험금의 지급
-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금지급내역 안내 등 보험금지급·심사 결과의 안내 및 고객 응대

####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보험금 청구서상 개인(신용)정보,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여부

피보험자

동의함

보험수익자

동의함

###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질병 등 민감정보 처리 동의여부

피보험자

동의함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동의여부

피보험자

동의함

보험수익자

동의함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서명)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서명)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서명)		(서명)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모두 각각 서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보험업 감독규정 중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 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1.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고객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또는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를 참고하시어 해당 서류를 접수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청구하여 주십시오 (Life Planner® 보험금 청구 서비스 / Life Planner® 등기우편 접수 / Life Planner® Fax 접수(3백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접수 가능) / Agency 내방 접수 / 홈페이지 접수(소액청구인 입원, 수술 청구만 가능)

## 2. 청구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청구서류를 접수하여 주시면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심사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장 상의 서류 이외에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심사를 위한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 라이프플래너(Life Planner®) 또는 CS Center(보험금 전담 상담) : 1588-3374(단축 번호5번)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보험금 송금처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수익자(청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계좌로 수령가능하며, 이 경우 친권자(부모) 관계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주소변경 통지

약관에 의거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소멸됩니다. (상법 제 662조)

## 3. 접수 및 심사 진행에 관한 내용

### ◆ 보험금 접수 안내

제출하여 주신 서류가 당사 보험금 심사부서에 접수될 시, 처리 지연시, 그리고 지급 확정시 요청하신 안내 방법에 따라 안내 하여 드립니다.

### ◆ 심사 진행사항 안내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를 통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진행과정 및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에 대한 동의

약관에 의거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및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손해사정법인 선임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를 받습니다.

###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를 받은 업체

[당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의료심사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암, CI 특약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 4.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안내

### ◆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

약관에 의거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지급기일(비조사시 3일, 조사시 10일)내 미지급시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접수한 날"이라 함은 청구서 및 모든 구비서류가 회사에 도착한 날을 말합니다.)

약관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을 자)에게 서면,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안내 드립니다.

## 5. 보험금 지급 내역 안내 및 지급결정에 대한 안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청구 시 통보하여 주신 주소와 연락처로 서면(보험금 지급 내역 안내장),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안내 드립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안내드립니다.

회사의 지급결정 또는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로 재심사를 청구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prudential.co.kr / CS Center(보험금 전담 상담) : 1588-3374(단축 번호5번) / 우편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8 푸르덴셜타워 18층 (보험금팀 재심사 청구 담당자 앞))

최초 청구 관련 문의는 담당 Life Planner® 또는 CS Center 에서 안내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 ◆ 사고내용·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청구서류는 원본 기준이며, 병원발급 서류는 병명, 병원직인, 환자인적사항 및 청구사유별 치료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 보험금 송금계좌는 수익자 본인 명의의 계좌입니다.
- ◆ 보험금 심사시 현장확인 및 병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동의서 등을 추가서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FATCA(Foreign Account Tax Copliance Act) 법률에 따라, 법인이 수익자인 사망 및 1급 보험금 청구 시 법인용 본인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청구건은 추 후 법인 또는 개인용 본인확인서를 추가 서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득이 제3외국어인 경우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보험금 청구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 ◆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담당 라이프플래너(Life Planner®) 또는 CS Center(보험금 전담 상담) : 1588-3374(단축 번호5번)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공통 서류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 청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친권자 1인 청구 가능 • 청구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대리인 청구시 : 당사 위임장 양식 사용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 대조필 포함)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재해사망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필요  - FNB(사후정리급여금) : Fax 접수 가능  - 대표수익자 지정시 : 당사 대표수익자 지정서 양식 사용
입원	- 진단서 [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같음]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담당 라이프플래너(Life Planner®) 또는 CS Center(보험금 전담) : 1588-3374 (단축번호 5번)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 후유장해진단서는 반드시 해당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장해진단 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로 제출 필요  - 재해장해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필요  - 팔, 다리관절, 척추장해는 반드시 AMA 방식의 운동각도 기재
진단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예시] 암 : 조직검사결과지 / 뇌졸중·급성심근경색 : 정밀검사결과지(CT, MRI, 심전도 등)	- 진단사실 확인서류는 반드시 해당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진단확정 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로 제출 필요
골절	- 진단서 · 처방전 · 진료확인서 · 소견서 · 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수술	- 진단서 ·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재해수술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필요
재해 입증 서류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발급 처	- 사망진단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후유장해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수술확인서 : 해당 의료기관 - 재해입증서류, 가족관계확인서류 : 관공서	



# 위 임 장

대리인 (위임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			
성 명		주민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수익자로서 보험금 청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시는 분)			
성 명	(인감 또는 서명)	주민번호	-
위임내용		전화번호	
주 소			

※ 인감 날인한 경우 :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한 경우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최소한의 정보 처리 및 동의거부에 관한 안내**
  - 정보동의 시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용 및 제공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은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함</li> </ul> </li> <li>· <b>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적 등)</li> </ul> </li> </ul> |
|---|---|

###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서 명
대리인 (위임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		